

의안번호	제489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0년 4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8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4월 6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근거법 「측량법」 폐지 및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시행
-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

2. 주요내용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명칭 개정(안 제1조)
-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
- 회의록 작성 및 보고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 등) ① 충청북도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상

2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,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의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가”로 한다.

제8조 중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 35조 내지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</u> <u>2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 <u>3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시군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.</u> <u>4.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서기는</u> 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 9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구성 등) ①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상</u> <u>2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 <u>3.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,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</u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.	
5.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	<삭 제>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	<삭 제>
1. 시군지명위원회의 지명에 대한 보고사항의 조정 결정	
2. 도관할 구역안에 지명의 제정·변경 또는 조정	
3. 지명에 관한 조사, 자료수집 및 분석	
4.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	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도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	<삭 제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.	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의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역 행정기관 소속공무	

현 행	개 정 안
<p><u>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"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 상조례"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의록)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
	<p>제7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- 제91조 (지명의 결정)**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- 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 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- 제89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(이하 "지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90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1조(간사)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 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.

제92조(수당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3조(현장조사 등)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4조(회의록)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